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양부남 · 강준현 · 김문수
김영환 · 김현정 · 민병덕
박균택 · 박수현 · 박정현
이강일 · 이광희 · 이성운
정준호 · 정진욱 · 조계원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·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,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.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·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·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·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,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.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

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”을 “말한다),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통보 및 개선조치) ①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점검 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,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 ⑤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말한다),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----- ----- -----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12조의2(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 통보 및 개선 조치)</u>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점검 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,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·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